

■ 인지세 안내

부동산 분양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공급계약체결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이에 따라 공급계약체결일 전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 시 사본제출, 원본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■ **인지세 과세대상 및 구입처** [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, 제3호 및 제8조]

구분		내용
과세대상		분양계약서(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)
발급처	방문발급	우체국·은행 방문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(사본)
	온라인발급	전자수입인지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

■ 인지세 연대납부에 따른 환급 안내

인지세법 및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개정에 따라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해야 합니다. 수분양자께서는 공급계약 체결 시 전자수입인지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인지세액의 50%는 향후 환급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기재금액	세액
1억원초과~10억원이하	15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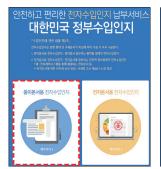
- ① 계약서 작성시 15만원 인지세 납부증 및 동장사본 제출
- ② 인지세의 50% 금액인 7만5천원 금액 계약자가 제출한 통장으로 환불

■ **온라인 이용방법**(카드결제, 계좌이체 가능)

- 1. 전자수입인지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인터넷 검색창 "전자수입인지" 검색
- 2.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후 비회원 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







THE STATE OF THE S

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재발행 불가)

■ 오프라인 이용방법(신분증 지참, 현금결제만 가능)

- 1. 우체국, 은행 방문(방문전 문의 요망)
- 2.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
- 3. 전자수입인지 발급



■ 인지세 납부안내

인지세 납부	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 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분양계약시 전자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과세대상	부동산 분양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소유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대상 ※ 관련법령 :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, 제8조
납부방법 및 기한	분양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
전자수입인지 구입방법	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에서 구입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전자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, 보관

■ 인지세 세액

기재금액	세액
1억 초과 ~10억원 이하	15만원

■ 인지세 구매방법 및 구입처 안내

구분	온라인	오프라인
구입처	전자수입인지사이트 (www.e-revenuestamp.or.kr)	우체국, 은행
구입방법	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② 종이문서용 "전자수입인지" 클릭 ③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④ 구매클릭 후 납부정보 입력 용도 :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 : 1.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등기 금액 :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 매수 : 1매 ⑤ 결제 (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) ⑥ 출력 ⑦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	① 인근 우체국 또는 은행방문 ②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용도:인지세 납부 금액: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 매수:1매 성명 / 주민등록번호 / 연락처기재 ③ 결제 (현금납부만 가능) ④ 전자수입인지 발급 ⑤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

■운영절차

납부비율	당사 50%, 계약자 50% 반영	
납부방식	가부방식 계약자 선납 (100%) 후 정산 (50%)	
서류제출	계약자 신분증, 통장사본	

[※]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으로 구입하셔야 히며,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간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인계하는 것은 납세의무 미이행으로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.

[※] 분양권 전매계약서 작성 시 "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"에 해당하므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·날인을 한 때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, 여러 회 전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매 시마다 인지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